

식민지 조선 침탈을 철저히 군부에 의한 계엄통치 방식으로 자행하였다. 일제의 1910년대 식민정책은 흔히 무단통치라 하여 헌병경찰제도를 기초로 했다. 이 제도는 헌병이 일상 경찰업무를 담당한 점을 특징으로 한다. 헌병부대 책임자가 경찰관서의 장을 겸임하였고, 헌병경찰은 의병 진압·첩보 수집·검사업무 대리 등의 임무와 범죄 즉결처분·민사쟁송 조정권·징세 보조 등의 권한, 그리고 일본어의 보급·농사개량·징세·산림·위생 등과 같은 행정 업무까지 수행하였다. 즉 헌병경찰제는 조선총독부의 행정수탈의 말단 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하였다.

무단적인 조선통치는 악법의 시행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1910년 12월 범죄즉결령, 1912년 3월의 경찰법 처벌규칙과 조선태형령은 식민지법령의 무법성을 전형적으로 보여준다. 조선인은 정식적인 법적 수속과 재판없이 태형을 당하여 사망 혹은 불구가 되었다. 물론 조선인의 모든 집회·시위·언론·출판의 자유는 부정되었다. 이처럼 1910년대 일제의 식민지 조선 통치는 소수의 친일파를 제외한 거의 모든 조선인의 자유를 박탈하는 방식으로 자행되었다. 이러한 폭압적인 군부통치는 사상적·문화적 측면에서 보다 우월한 전통을 지니고 있었던 조선인을 일본에 흡수하고자 하는 동화정책 즉 조선말살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었다.

일제의 조선침략은 교육정책에도 그대로 나타났다. 일제의 교육정책은 일본은 문명이며 조선은 야만이라는 기초에서 시행된 ‘우민화와 황민화’를 겨냥한 노예교육이었다. 일제는 1911년 8월 조선교육령을 공포하여 ‘제국신민으로서의 자격과 품성’을 갖추고 ‘충량한 신민을 육성’하고자 하였다. 그들은 조선인에게는 처음부터 보통교육만을 받게 하였고, 이후 극소수의 친일파에게만 고등보통교육을 하였고, 나머지는 식민지 수탈의 하급보조층으로 양성하였다. 조선인은 상업학교, 농업학교, 사범학교에만 진학의 길이 열렸으며, 물론 대학은 설립되지 않은 채, 전문학교만 4군데 설치되었다.

일제는 조선인 교육을 위한 재산이었던 구래의 향교 재산을 비롯하여, 마을단위 서당을 운영하는 학교전(學敎錢) 등 공유재산을 약탈하였을 뿐만 아니라 학교비를 지세에 부과하였다. 또한 그들은 조선인의 자주적인 민족 교육 운동을 철저히 탄압하였다. 특히 지방에서 민간주도로 설립하였던 많은 사립학교는 공교육의 이름으로 보통학교로 개편·관립화 되었다. 1918년에는 서당규칙이 제정되어, 민족의 교육열을 반영하여 설립되었던 전국



무단적인 조선통치는 악법의 시행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1910년 12월 범죄즉결령, 1912년 3월의 경찰법 처벌규칙과 조선태형령은 식민지법령의 무법성을 전형적으로 보여준다.

각지의 2만 4천개소가 넘었던 서당이 탄압을 받았다. 그리고 일제는 조선어 교육을 폐기하였고, 조선의 역사·지리를 일본의 역사·지리에 포함시켰으며, 민족정신과 의식을 고취하는 애국계몽운동기에 편찬된 많은 교과서의 사용을 금지시켰다.

이처럼 그들은 무단적인 교육을 동화교육이라는 미명 아래 시행하여, 조선인의 창의성과 자발성을 억압하였다. 조선인은 민족적 주체성이 점차 말살되었으며, 일제의 지배에 순응하는 하등부용 신민으로 낙인찍혔다.

일제의 식민지 경제정책은 경제 수탈에 그 목적을 두었다. 이를 제도화하는 작업이 토지소유제도와 지세제도의 근대화라는 명분 아래 실시된 토지조사사업(1910~1918)이다. 일제는 토지 소유권의 확정·등기제도의 확립, 소유권에 기초한 지세제도 정비 등을 명분으로 삼아 이 사업을 단행하였다. 그러나 토지조사사업의 근본목적은 침략과 수탈을 위한 재원확보에 있었다.

그들은 국유재산 및 황실재산을 조사·정리하는 한편, 토지에 관한 관습·관행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역둔토를 포함한 농경지 27만 2천 정보가 국유지로 편입되었고, 편입된 국유지는 조선총독부와 동양척식주식회를 통해 일본인 이민자와 자본가에게 싼 값에 불하되었다.

토지조사사업은 조선을 일본자본주의의 발전을 위한 식량, 공업원료의 약탈지대로 재편하고, 그와 동시에 일본자본제 상품을 판매하고 과잉자본을 투자하는 상품판매 및 자본투자시장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기초 조사였다. 토지조사사업이 완료된 1918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지세는 1911년에 비하여 1.6배 증대되었고, 토지소유권 등기제도가 정착되면서, 1909년 일본인 지주 692명, 5만여 정보에서 1915년 일본인 지주 6,969명 20여만 정보로 확대되는 등 일본인 지주의 토지수탈도 급증하였다.

조선의 농촌사회는 극심한 붕괴를 겪었다. 1918년 3%에 해당하는 지주가 전체 농경지의 50%를 초과하게 소유한 반면, 자작농은 20%에 지나지 않았고, 나머지 77%는 소작농이었다. 이것은 토지조사사업 기간 동안 일본자본과 조선인 지주자본이 토지집중을 실현해 나갔음을 의미한다.

토지조사사업은 기존의 봉건적인 지주·소작관계를 온존시켰을 뿐만 아니라, 지주의 권리를 비호하고 소작농의 토지와 관련된 전통적인 권리(소작권 혹은 경작권)를 훼손하면서 반봉건적인 지주제 확립에 역할을 하였다. 다시 말해 조선의 국토는 토지조사사업의 결과, 일본 자본의 토지 침탈



토지조사사업은 조선을 일본 자본주의의 발전을 위한 식량, 공업원료의 약탈지대로 재편하고, 그와 동시에 일본자본제 상품을 판매하고 과잉자본을 투자하는 상품판매 및 자본투자시장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기초 조사였다.

에 아무런 대비 없이 노출되었다.

조선의 농업도 역시 일제의 수탈구조에 종속되었다. 일제는 조선 농업의 식민지적 재편을 위해 농민을 면작조합·양잠조합·축산조합 등 작목별로 하향식으로 조직하여, 생산과 판매의 전과정을 장악하였다. 조선을 쌀과 면화, 누에고치 등과 같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기지로 만들었다. 이처럼 조선 농업의 식민지적 재편은 조선농민의 저항과 이를 억압하는 폭력적 강제가 수반되는 무단농정의 자행 속에서 진행되었다. 일제의 무단농정은 지주층의 일제 식민지 지배구조에 편입, 자작농과 자소작농의 몰락을 초래하였다.

일제는 한편으로 수탈의 확대를 위해 교통 운송시설을 정비하였다. 교통 운송시설의 확충은 조선에 철도와 도로, 항만을 구축하여, 일본과 조선의 주요지점을 연결함으로써, 조선의 정치·군사적 지배망을 확대하는 동시에, 일본 상품 반입과 조선의 원료·식량 반출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었다. 또한 조선의 민족자본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회사령을 이용하였다. 일제는 조세수탈도 강화하였는데, 지세령·연초세·주세 등을 부과시키고 각종 잡세를 개설·인상하였다.

일제에 의한 조선경제의 식민지적 재편과정은 일부의 지주세력과 예측적인 자본가를 제외하고 전조선 민족의 몰락을 강요하였다. 다수의 농민은 제국주의 자본과 권력에 의해 잉여를 탈취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세수탈에 희생당하였다. 소작지마저 얻지 못했던 농민은 농업노동자가 되거나 화전민이 되었고, 일부는 농촌을 떠나 광산이나 철도·항만 등 토목공사장의 일용노동자가 되었다. 그리고 새로운 일터를 찾아 만주·시베리아·일본·중국·하와이·미주대륙 등으로 이주하는 조선인이 점차 증가하였다. 이들은 민족적인 멸시와 천대 속에서 혹사당하였고, 국내의 노동자 역시 열악한 작업조건에서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에 수탈당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은 조선인 거의 모든 계층이 일제에 대항하면서 자신의 계급적 이해를 실현하고자 투쟁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내몰렸음을 의미한다.



일제에 의한 조선경제의 식민지적 재편과정은 일부의 지주세력과 예측적인 자본가를 제외하고 전조선 민족의 몰락을 강요하였다.

2) 3·1운동

3·1운동은 일제의 무단통치에 대한 반발과 국제 정세의 변화라는 배경 속에서 비롯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 후, 러시아의 볼셰비키 혁명은 사회주의 사상을 확산시키며 전세계 약소민족에게 희망을 주었다. 여기에 윌슨의



사진2-100 : 태화관에서 민족 대표 33인의 회동



최초의 독립 선포는 만주에서 김좌진·김규식·이동녕 등 39인에 의해 이루어졌던, 이른바 무오독립선언이었다.

민족자결주의가 국내에 알려지면서 조선인들의 독립에 대한 열망을 부채질하였다. 그러나 3·1운동 지도부는 월슨의 민족자결주의가 제1차 세계대전 종결 이후 강대국 중심의 세계 질서 재편 논리에 불과했음을 간과하였다.

최초의 독립 선포는 만주에서 김좌진·김규식·이동녕 등 39인에 의해 이루어졌

던, 이른바 무오독립선언이었다. 그러나 월슨의 민족자결론에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인 것은 미주에 있는 독립운동가이었다. 비교적 독립운동에 자유로웠던 재미교포는 즉각 하와에서 모임을 갖고, 이승만·민찬호·정한경 등을 조선의 민족대표로 파리강화회의에 파견하기로 결의하고, 이에 필요한 독립운동자금 모금에 들어갔다.

이러한 재미교포의 동향은 언론을 통해 일본의 동경유학생에게 알려졌다. 동경유학생은 최원순·정광호·김안식·김현준·백관수·최팔용·전영택·서춘·윤창석·송계백·이종근·김상덕·김도연·최근우·김철수·이광수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 행동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들은 독립운동의 방법으로 독립선언서를 발표하고 그것을 일본 각계 주요부서와 각국 공사관에 송부할 것을 결정하였다. 그 결과 ‘조선청년독립단’이라는 단체 명의로 동경의 기독교청년회 1층 강당에서 독립선언문과 결의문(2·8독립선언)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국외 동향은 즉각 조선에 알려졌다. 국내에서의 조직적인 움직임은 청년학생과 지식인, 종교계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천도교, 기독교, 불교 등의 종교지도자와 지식인들은 수차례의 모임을 거치면서 독립요구를 정치적인 선언형태로 할 것을 결정하고,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운동 전개의 원칙으로서 ‘대중화, 일원화, 비폭력노선’을 견지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와는 별도로 학생들은 대중적인 시위운동을 모색하면서, 민족대표의 독립선언운동과 합류, 이후 별도의 독자적인 시위운동을 계속할 것을 결정하였다. 선언서의 배포, 학생의 동원, 시위계획의 준비 등은 학생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3·1운동의 주체 가운데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은 천도교였다. 천도교는 교주인 손병희를 비롯하여 최린·권동진·오세창 등 민족의식이

강했던 인물이 많았다. 그리고 기독교를 비롯하여 각 계통에 자금을 조달해 준 것도 천도교이었고, 독립선언문 등 각종 인쇄물을 담당했던 것도 천도교이었으며, 기독교·불교·유림·학생층을 포섭한 주체도 천도교이었다. 천도교 측을 중심으로 이승훈 등 기독교계 인사, 한용운 등 불교계 인사 등이 함께 하였다. 독립선언문의 기초(起草)는 최남선이 하였고, 선언문 뒤의 공약삼장(公約三章)은 한용운이 추가하였다.

민족대표는 3월 1일 파고다공원에서 독립선언식을 거행할 계획을 세웠으나, 폭력사태를 우려하여 태화관으로 자리를 옮겨,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일제 관헌에 투항하였다. 그러나 학생들은 파고다공원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시위에 들어갔으며, 같은 날 평양·원주·의주 등지에서도 시위가 일어났다. 이후 ‘조선독립만세’를 외치는 시위운동은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3월 상순까지는 기독교와 천도교 조직이 강한 경기도·평안도·황해도·함경남도 등지로 확산되었고, 3월 중순부터는 남부지방을 포함하여 전국화되면서 도회지뿐만 아니라 군단위 이하로 파급되었으며, 서간도, 연해주 등 해외에서도 만세시위가 전개되었다.



민족대표는 3월 1일 파고다공원에서 독립선언식을 거행할 계획을 세웠으나, 폭력사태를 우려하여 태화관으로 자리를 옮겨,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일제 관헌에 투항하였다.



사진2-101 : 손병희



사진2-102 : 이승훈



사진2-103 : 한용운

2. 3·1운동과 광양

1) 운동의 발발

전남지방의 3·1운동은 다른 지방에 비해 늦게 시작되었다. 이것은 총과

칼을 앞세운 폭압적인 초기 진압과 삼엄한 감시가 자행됨으로써, 적극적인 독립요구 시위가 위축된 결과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순천·보성 지방에서는 결사단체를 결성하여 조직적으로 봉기하였는가 하면, 목포에서는 일제의 감시망을 따돌리며 대대적인 시위가 전개되기도 하였다.

전남 지방의 3·1운동 주도층은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기독교·천도교·학생·청년·유생층 등이었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광주·목포 등 도시지역은 기독교도가, 광양·장흥·순천·여수·구례 등 전남 동부지역은 천도교도가, 강진·고흥·순천·완도 등은 기독교도와 천도교도가, 영광·곡성 등은 교사가 주도하였다.

전남지역의 만세시위는 평안도나 경기도 등지에 비해 격렬한 양상을 띠지는 않았다. 그 이유는 이 지역의 천도교나 기독교의 교세가 상대적으로 미약했으며, 유생층도 한말 의병봉기로 커다란 손실을 입어서, 운동을 주도할 만한 역량이 충분치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는 청년층이나 학생층이 직접 운동의 주도층으로 나선 경우가 많았다.

전남지방의 3·1운동은 3월 10일에 전개된 광주시내 시위가 최초이었다. 그러나 광주에서의 시위 움직임은 일찍부터 있었다. 일본 유학생이었던 정광호·최원순 등이 2·8독립선언에 참가하였는가 하면, 이들은 국내에 들어와 비밀리에 만세시위를 준비하였다. 당초 광주의 큰 장날인 3월 8일의 거사가 계획되었으나, 준비부족과 연락의 미비 등으로 연기되어 3월 10일 만세시위가 일어났다. 이 시위에는 기독교인과 송일·수피아·농업학교 학생들, 광주의 작은 장날(당시 부동교 근처에 작은 장이 섰다.)에 모인 장꾼과 상인, 시민 등이 모두 합세하였다.

특히 광양출신인 진신애(陳信愛)는 당시 수피아여학교의 교사로 재직 중이었는데, 이곳에서 전개된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 그는 3월 10일 박애순(朴愛順) 교사와 함께 기숙중인 여학생들에게 독립정신을 고취하였으며 수피아여학생들을 이끌고 광주 장터로 나아가서, 모여든 시위군중에게 독립선언서와 태극기를 나누어 주었다. 그는 이처럼 선두에서 서서 학생들을 지휘하며 독립만세를 고창하다가 일경에 검속되었고, 광주지방법원에서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월형을 언도받아 1년여의 옥고를 치렀다.

광주시민 모두가 하나가 되어 만세시위를 전개하자, 광주시내는 이들에 의해 완전히 장악되어 시위의 물결을 이루었다. 그러나 일제는 일본 헌병과 경찰뿐만 아니라 재향군인·소방서원까지 동원하여 비무장·비폭력의 평



특히 광양출신인 진신애(陳信愛)는 당시 수피아여학교의 교사로 재직 중이었는데, 이곳에서 전개된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

화적인 행렬에 폭행을 자행하였다. 이날 일제경찰은 약 70여 명에 달하는 시위참가자를 체포하여 감옥으로 송치하였다.

이처럼 폭압적인 탄압에도 불구하고 시위는 전남 각지로 확산되었다. 광주 시내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3·10만세시위는 인근 농촌지대로 확대되면서 야음을 이용한 봉화투쟁과 횃불시위로 발전하였다. 이때 이름없는 수많은 민중은 자신들의 조건에 맞게 민족독립의 염원을 열렬히 표현하였던 것이다.

2) 운동의 전개

독립선언서가 광양에 전달된 것은 3월 3일 순천으로부터이었다. 그러나 그 이전부터 이미 광양에서도 만세시위 움직임은 있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세시위가 표면에 나타난 것은 3월 27일(음 2월 26일) 광양 장날부터이었다. 이 날은 전국적인 경우로 볼 때, 매우 늦은 편에 속한다. 이것은 지리적 여건과 함께 일제의 삼엄한 감시로 만세시위 준비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광양에서 3·1운동의 기운이 움틀 때, 이웃 하동에서는 계속적이고 격렬한 운동이 전개되고 있었는데, 그것은 광양 유지들에게 분발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 가운데에서도 옥룡면 출신 유생 정성련(鄭星鍊)은 일찍부터 일제침략에 적극 반대해 왔고 국권회복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기회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서울을 비롯하여 각 처에서 만세운동이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을 접하고, 자신도 이 운동에 참가하여 민족적 숙원을 성취해야 하겠다고 굳게 결심하였다. 그는 동조자를 얻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일제의 삼엄한 경비로 실패하자, 마침내 단독으로라도 군중을 인도하여 만세시위를 전개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리하여 3월 27일 광양 장날, 한지로 만든 태극기를 몸에 품고 읍내에 나아가 기회를 살폈다. 일제 헌병과 경찰은 내왕하는 사람들을 일일이 감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좀처럼 거사를 하기 어려웠다. 이리저리 상황을 살피던 정성련은 오후 3시 반경에야 많은 사람들이 모인 시장 한가운데에서 태극기를 장대에 매어 머리 위에 높이 들고 휘두르며 군중들을 향하여 ‘만세, 만세, 대한독립만세’를 소리높여 3번 부르니 군중들이 모두 환호하며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 그러나 순찰하던 적 헌병에 의하여 정성련은 검속되고



광양에서 3·1운동의 기운이 움틀 때, 이웃 하동에서는 계속적이고 격렬한 운동이 전개되고 있었는데, 그것은 광양 유지들에게 분발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었다.



만세운동으로 인심은 한층 긴장되었으며 청년들과 지식들은 비밀연락을 취해가면서 재거를 계획하였다.

군중은 해산당했다. 정성련은 그를 심문하는 육군 헌병 상등병 삼산희대치(杉山喜代治)와 자신을 재판하는 법정에서도 자신이 만세시위를 주도했던 것에 대해 굽힘없이 시인하였다.

이 만세운동으로 인심은 한층 긴장되었으며 청년들과 지식들은 비밀연락을 취해가면서 재거를 계획하였다. 그 중에도 인덕면의 학생인 김영호(金永鎬), 박용수(朴溶洙), 김석용(金錫溶) 등은 3월 29일 인덕면 인동리 이재갑(李在甲)의 집에 모여, 4월 1일의 장날을 기하여 크게 만세운동을 일으킬 것을 결의하고 태극기를 만드는 한편, “독립만세를 부르게 되니 4월 1일에 유지자는 성내로 모여라! 만일 오지 않는 자가 있으면 집에 불을 지른다. 본 군민은 전부 내립하라! 광양유지 청년”이라는 내용을 적은 비라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마침 자리를 함께 한 김태훈(金泰勳), 김태성(金太星), 김행진(金行鎭), 박용완(朴用完) 등에게 “조선 각지에서 독립운동이 크게 일어나는 것은 우리와 뜻이 같기 때문이다. 우리도 오는 4월 4일 광양읍 시장에서 조선독립만세를 불러 많은 사람들에게 독립사상을 심어 주자”고 종용하면서 비라를 3월 29일 밤, 각 요소에 붙이게 하였다.

그렇지 않아도 3월 27일의 만세운동에 뒤이어 또 무슨 일이 있거나 않을까 해서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던 적 헌병과 경찰은 더욱 삼엄한 경계를 펴고 있었기 때문에, 거사계획은 사전에 발각되었고 김영호, 박용수, 김석용 등은 검속당하고 말았다. 비록 거사계획은 실패로 돌아 돌아갔으나 이들도 역시 헌병의 신문과 조사에서 그들의 계획을 뚝뚝이 밝혔다. 김영호·박용수·김석용 등은 각각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및 출판법 위반으로 징역 8월형을 언도받고 옥고를 치렀다.

한편, 4월 1일의 만세시위는 실패하였지만, 이날 김상후(金尙厚)는 음식점에서 30여 명의 군중에게 독립만세운동의 당위성과 독립사상을 고취하다가 일경에게 검속되었다. 그도 4월 26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청에서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8월형을 언도받고 광주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그의 공적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으며 2002년에는 국가유공자 증부에 등록하였다.

이러한 일제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4월 4일 오후 4시쯤에는 서경식(徐璟植), 박용래(朴龍來), 정귀인(鄭貴仁) 등의 주도로 광양읍 시장에서 만세시위가 일어났다. 서경식은 오래 전부터 만세운동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날 김만두(金萬斗), 여동기(呂東琪), 박용래, 정귀인 등과 더불어 시장 큰길에



사진2-104 : 독립투사 김상후 (옥룡면 상평)

서 태극기를 높이 들어 휘두르며 “대한독립만세”를 연거푸 외쳤다. 서경식은 다시 군중을 향하여 일본의 강도적인 침략행위를 공격하고 모두가 독립운동에 궤기할 것을 촉구하는 연설을 하였다. 그러자 넓은 장터에 모인 1천여 명의 군중이 호응하여 만세를 불러 온 장터는 만세소리로 진동하였다.

이때 적의 헌병들과 기마대는 군중을 강제 해산시키고 주동인물을 붙들기 시작했다. 평소 용력이 절륜했던 서경식은 붙들려는 적병을 뿌리치고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육탄전을 전개하여 적의 간담을 서늘케 하였다. 그러나 그도 박용래, 정귀인 등과 함께 적병에게 끌려갔다. 이들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청에서 보안법 위반으로 각각 징역 8월형을 언도받고 옥고를 치렀다. 특히 서경식은 감옥에서 심한 고문을 받아 석방될 때에는 불구의 몸이 되었다.

한편 옥룡면 운평리에 있는 서당 견용재(見龍齋)에서 글을 읽던 이기수(李基壽)·김영석(金領錫)·최준수(崔俊秀)·서성식(徐聖植), 서찬식(徐贊植), 박봉섭(朴奉燮, 炳元)·나성길(羅成吉, 鍾吉) 등 15~16세의 소년들은 “선열들이 독립만세를 부르다가 적들에게 끌려갔는데 우리가 어찌 앉아서 공부만 할 수 있느냐”고 결연히 일어났다. 이들은 4월 5일 태극기를 만들어 들고 독립만세를 소리높이 외치며 읍내를 향하여 나아가다가, 도중에 적들에게 붙잡혀서 심한 폭행을 당했다. 그러나 이들은 어른 못지 않게 적의 폭력에 대항하였는데, 그 가운데에도 16세 소년 이기수는 “기어다니는 어린애도 어머니를 부를 줄 안다. 내 비록 어릴지라도 내 나라를 위하여 국치를 씻고자 한 것이다. 너희들의 법이란 걸 내 어찌 겁내리오”하면서 항거하였고, 김영석은 “남의 나라를 강탈한 놈들이 무슨 잔소린가? 내 한 몸이 두동강이 되어도 마음은 한 마음 뿐이라.”고 하면서 항변하였다. 이들은 반년내외의 징역을 선고받았는데 해방 후 백운산 아래 견용재 옛터에 이들의 3·1운동 의거를 기리는 기념비가 세워지기도 하였다.

광양읍 우산리 김희노(金希老)는 천도교인으로써 서울에서 손병희 선생의 지도 아래 3·1운동의 계획을 논의하였다. 그는 광양에 돌아와 독립선언서를 군내에 전파하고 거사를 준비하였다. 그는 빙고등(氷庫嶺)에서 교인과 일반인 수백 명이 함께 모여 우국예배를 올린 다음 전원이 통곡예배를 하였다. 그는 순천헌병대에 체포되어 가혹한 고문을 당하여 귀가 먹는



사진2-105 : 오의사 삼일운동 기념비



사진2-106 : 철의사 삼일운동 기념비

불구가 되었다.

또한 정자삼(丁子三)이라는 천도교 전도사는 시위군중을 격려하다가 체포되었는데, 구류 중 다음과 같은 한시를 지어 독립의 의지와 지사의 충절을 노래하였다.

나를 가둔 이 문은 언제 열릴까(鎖我此門幾日開)
 아득한(독립의) 소식 하늘같이 멀구나(茫茫消息滿天涯)
 갖가지 형벌에도 충렬의 뜻 꺾지 않으리(五戒無威忠烈志)
 온갖 꽃 다투어 필 때면 은은한 향기 예(감옥)에서도 맡겠네(六花生色暗香來)

한편 4월 15일에는 진월면 선소리 소재 무점도(無蝶島) 시회를 이용한 만세계획이 있었다. 임태일(任泰駟)은 일찍부터 일제의 조선통치에 반대하여 나라의 독립을 희망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4월 15일 무점도에서 시회가 열린다는 소문을 듣고 자신이 시회에 참석하여 만세운동을 일으키기로 결심하였다. 임태일은 전날인 14일 서당에서 생도들과 함께 한지에 태극기 2장을 그린 뒤, 그날 밤 월길리에 있는 서당으로 가서 시국을 설명하면서 거사를 종용하였다.

그리하여 15일 아침, 서당생도 정순제(鄭淳悌) 등 6명과 함께 시회에 참가하여,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를 기다리면서 거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곳에 시회가 있고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을 경계한 일제 헌병에 의해 임태일 등은 검속당하고, 태극기는 빼앗기고 말았다. 임태일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청에서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형을 언도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적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한편 박제웅(朴齊雄)은 일찍이 하동군에서 교직생활을 하다가 일진회의 반역적 행위에 분개하여 교직을 사퇴한 후, 국내에서의 만세운동이 국권회복의 성과를 거두지 못함을 보고, 그해 12월에 상해로 건너가 임시정부에서 활동하였다. 그는 임시정부로부터 충청도 및 전라도에 임시지방방통국 설치의 임무 및 대동단으로부터 군자금 모금의 임무를 맡고 귀국하여 나창현·이재연 등과 연락해 가며 광주·대전 등지에서 활동하였다.

이처럼 3·1운동은 거족적인 민족해방운동이었다. 그것은 일제와 친일세력에 대해 심대한 타격을 주었으나 일제의 야수적인 탄압에 의해 좌절하지 않을 수 없었다. 3·1운동의 좌절은 단순히 일본제국주의의 탄압 때문



3·1운동은 거족적인 민족해방운동이었다. 그것은 일제와 친일세력에 대해 심대한 타격을 주었으나 일제의 야수적인 탄압에 의해 좌절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만은 아니었다. 그것은 조선민족운동의 주체적인 역량의 문제와 관련된 측면, 즉 전민족적인 항쟁을 조직하고 지도할 수 있는 민족운동에서의 통일적인 지도기관이 없었다는 것에도 원인이 있었다.

통일적인 민족운동체의 수립은 주도주체와 올바른 지도노선이 요구되지만, 당시의 민족대표는 그러한 만한 역량과 기반을 가지고 있지 못하였다. 이것은 일제의 탄압에 의해 거의 모든 정치사회단체가 해체되었고, 종교지도자가 민족대표로 나설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따른 것이기도 하지만, 이른바 민족대표가 계획단계에서 대중적 요구를 수렴하고 역량을 결집시키려는 노력을 등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운동방식을 대중의 반일민족의식을 조직화하고 비타협적 투쟁방법을 선택하기보다는 일제에 투항하여 투쟁을 지도하기를 스스로 포기한 것에서도 원인이 있다.

이같은 지도부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청년학생 및 농민·노동자는 비타협적이고 강고한 투쟁을 조직하고 전개해 나갔다. 그 결과 이른바 민족대표의 지도력과 노선상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전민족적 연대를 굳건히 함으로써, 다양한 계층·계급적 요구를 투쟁을 통하여 일체화해 나갈 수 있었다. 또한 3·1운동은 민족운동의 통일적 지도기관의 창설이 불가피하며, 이를 위해서는 민중의 생활상의 요구를 수렴하고 민족적 과제의 실천을 위해 민족적 무장력의 필요성과 제국주의 세계체제에 대한 피압박민족간의 국제적 연대가 필요함을 인식하게 되었다.



3·1운동은 민족운동의 통일적 지도기관의 창설이 불가피하며, 이를 위해서는 민중의 생활상의 요구를 수렴하고 민족적 과제의 실천을 위해 민족적 무장력의 필요성과 제국주의 세계체제에 대한 피압박민족간의 국제적 연대가 필요함을 인식하게 되었다.

3) 3·1운동 관련 광양인들의 판결문

대정 8년(1919) 형 제424호

판결

전라남도 광양군 옥룡면 추산리 농업 정성련(鄭星鍊 : 41세)

위 보안법 위반 피고 사건에 대해 조선총독부 검사 복전풍희(福田豊喜) 관여로 다음과 같이 심리 판결한다.

주문

피고를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품은 이를 몰수한다.

이유

피고는 유년 시에 거주지 서당에서 한학을 전수하여 스스로 양반을 칭하며 직업에 힘쓰지 않고 성격이 완명하여 시국의 추이를 살피지 못하고 평소에 배일사상을 품어 국권회복 시기의 도래를 기다려 오던 자인 바, 앞서 경성 및 기타 각처에서 다수 조선인이 시국을 분개하여 조선 독립운동을 일으켰음은 내 뜻한 바이므로 독립성취에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보고, 스스로 술선하여 다수 지방민에게 독립사상을 고취 선동하고 그 협력을 얻어 독립을 달성코자 염원하여 대정 8년 3월 26일, 자택에서 태극기 3개를 만들어 이를 휴대하고 27일 하오 3시경 광양군 광양읍 읍내 시장으로 나아가 국기를 대나무에 매달아 머리위로 높이 흔들며 “만세 ! 만세 ! 대한독립만세”라고 세 번 외쳐 군중에게 총독정치 반대의 사상을 고취 선동함으로써 더욱 반항심을 북돋아 주어 치안을 방해하였던 것이다. 이상의 사실은

1. 당 법정에서 피고가 판시 “일시·장소에서 대한독립만세를 삼창하였음은 틀림없다”고 진술한 바 있고,
1. 검사의 심문조서에도 이와 같은 요지의 공술 기재가 있으며,
1. 사법경찰관의 피고에 대한 심문조서 가운데에도 이와 동일한 요지의 공술 기재가 있을 뿐만 아니라,
1. 육군헌병 상등병 삼산희대치(杉山喜代治)가 작성한 기고에 대한 심문조서에도 이를 뒷받침하는 공술 기재가 있으므로 압수된 태극기의 현존함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함에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본다.

법률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의 소이는 대정 8년 제령 제7호 시행 전이므로 형법 제10조에 의해 신·구법을 비교하면, 구법인 보안법에 있어서는 동법 제7조에 해당되어 소정형인 2년 이하의 형기내에서 처단하며, 신법인 대정 8년 제령 제7호에 따르면 동령 제1호에 해당되어 10년 이하의 형기 내에서 처단할 것으로되 가벼운 보안법으로 다소러 징역 8월에 처하는 바이다. 압수품은 형법 제19조에 따라 이를 몰수할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정8년 4월 26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청 조선총독부 판사 궁택원야(宮澤圓也)

대정 8년 형 제434호

판결

전라남도 광양군 옥룡면 산남리 농업 서경식(徐璟植) 34세

동도 동군 동면 죽천리 농업 박용래(朴龍來) 46세

동도 동군 동면 동리 농업 정귀인(鄭貴仁) 35세

위 보안법위반 피고 사건에 대하여 조선총독부 검사 복전풍회 입회 하에 다음과 같이 심리 판결한다.

주문

피고 서경식·박용래·정귀인을 각각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품은 이를 몰수한다.

이유

피고 서경식은 앞서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내 및 기타 각지에 걸쳐 다수 조선인이 시국에 분개하여 조선 독립만세를 외치고 있음은 자기의 뜻에 합당하다고 하여 다수 조선인에게 독립사상을 고취하여 독립의 달성을

피하겠다는 생각에서 대정 8년 4월 1일, 광양군 인덕면 인동리 김만두(金萬斗) 방에서 피고 거주지에 사는 여동기(呂東琪)에게 위촉하여 백주에 ‘조선독립만세’라고 쓰게한 다음 이를 휴대하고 피고 박용래·정귀인과 함께 동일 하오 4시 경 동군 광양면 읍내리 도기정칠(島崎貞七) 방 앞길에 이르렀을 때 피고 박용래는 ‘이곳에서 조선독립만세를 외치자’고 제의하여 위 피고들도 이에 동의한 다음 서경식은 태극기를 휘두르며 부근의 약 천명의 군중을 향해 조선독립만세를 절규하고 불온한 언사를 농함에 헌병에 의해 체포 연행됨에도 불구하고 헌병대로 끌려가는 도중 줄곧 조선독립만세를 연호함으로써 총독 시정 방침에 반대사상을 고취선동하여 지방민으로 하여금 더욱 반항심을 불러 일으켜 치안을 방해하였다. 이상의 사실은,

1. 당 지방에서의 피고 서경식의 ‘피고 정귀인과 독립만세를 부를 것을 협의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그가 자기와 함께 만세를 불렀는지 조차 기억에 없다’고 진술한 외에는 판시사실과 동일한 요지의 공술이 있고,
 1. 동상 피고 박용래의 ‘판시 일시·장소에서 조선독립만세를 부른 것은 사실이나 이는 아무하고도 의논한 바가 없는, 순전히 자기 혼자 신념에 따라 단독으로 만세를 외쳤다’는 요지의 공술이 있고,
 1. 피고 서경식에 대한 검사의 신문조서에도 판시와 같은 요지의 공술 기재가 있으며,
 1. 동상 피고 박용래에 대한 신문조서에 동 피고의 공술로서 ‘판시 일시·장소인 광양읍내 시장에서 약 1천명의 군중을 향해 독립만세를 부른 사실이 있다’는 요지의 공술 기재가 있을 뿐 아니라,
 1. 사법경찰관 헌병 오장(伍長)의 피고 박용래에 대한 신문조서에 동 피고의 공술로서 ‘판시 일시에 광양 시장에서 자기는 만세를 부르다가 체포되었다’는 요지의 기재가 있고, 1. 동상 피고 정귀인에 대한 신문조서에 동 피고의 공술로서 ‘판시 일시에 광양읍내에서 조선독립만세를 외칠 때 체포되었는 바, 당시 이미 조선은 독립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도 기뻐 만세를 부른 것’이라는 요지의 기재가 있고,
 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각 피고에 대한 보고서에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고 서경식이 군중 속에서 ‘조선독립만세’라고 쓴 기를 휘둘러 위 피고 2명과 함께 독립만세를 외치고 있음을 보고 즉시 체포 연행하는 도중에도 계속하여 각 피고는 만세를 외치며 폭행을 가해 반항하고 혹은 남을 선동하여 군중은 소란을 피운 바 있다’는 요지의 기재가 있고, 압수한 기(旗)의 현존함을 종합하건대, 이를 인정할 증거는 충분하다고 본다.
- 법률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의 소위는 대정 8년 제령 제7호 시행 전에 이루어졌으므로, 형법 시행법 제2조·제10조에 의해 신·구법을 비교한 즉, 구법인 보안법에 따르면 동법 제7조에 해당하며, 조선 형사령 제42조에 따라 형명을 변경하여 징역형을 선택, 2년 이하의 형기 범위 안에 이를 처단하게 하며, 신법인 제령 제7호에 의하면 동령 제1조에 해당되어 징역형을 선택하고, 10년 이하의 형기 범위 안에서 이를 처단함이 당연하나 보안법의 형이 가벼우므로 형법 제6조에 따라 전계 보안법의 조문을 적용, 피고 등을 징역 8월에 각각 처하는 바이다. 압수품은 형법 제19조에 따라 이를 몰수한다. 그러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정 8년 4월 26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청 조선총독부 판사 궁택원야(宮澤圓也)

대정 8년 형 제480호

판결

전라남도 광양군 광양면 운평리 농업 김상후(金商厚) 50세

위 보안법위반 피고 사건에 대하여 조선총독부 검사 복전풍희 관여로 다음과 같이 심리 판결한다.

주문

피고 김상후를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피고는 유년시 살던 서당에서 한학을 전수하였는데, 성정(性情)이 고집이 세고 과격한 바, 일한병합보호조약 체결 이래로 신정(新政)의 통치에 기쁘게 복종하지 않고, 항상 불만을 품고 있던 차, 이번에 조선 각 도(道)에서 조선독립운동이 더욱 격렬해짐을 ‘나의 소견과 합당하다’라고 판단하여, 스스로 조선독립만세를 크게 외쳐 많은 농민에게 조선독립사상을 고취 선동(煽動)하여 농민의 협력에 의해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대정 8년 4월 1일 하오 5시경 광양군 광양면 광양 시장에서 당시 경계 중이던 헌병 하소화중차랑(下小鶴仲次郎)이 독립만세를 외치는 자를 수색하고 거동이 수상한자를 검사하고자 할 때, 피고는 “헌병이 무고한 인민의 신체를 검사하는 것은 불법이다”라고 격앙하여 반발하는 태도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같은 날 귀가하는 도중에 광양 읍내 음식점 윤대악(尹大岳) 집에 들러, 그곳에 와 있던 30여 명의 조선인에게 “일본과 조선은 전혀 다르다. 조선은 개국 이래 독특한 역사를 지니고 있으니 만큼 오늘날 민족자결(民族自決)로써 조선독립을 주장하고 독립만세를 외치는 것은 진실로 당연한 일이다”라고 불온한 언사를 하여 많은 사람에게 조선독립의 사상을 고취 선동하여 총독통치에 대한 반항심을 북돋아 치안을 방해하였다. 이상의 사실은,

1. 당 법정에서 피고의 ‘판시 일시 · 장소에서 헌병이 무고한 면민들에 대해 신체검색을 하려고 한 일은 있으나 자기 헌병에게 불법이라고 격앙하여 반항적 태도를 취했는지 여부는 취중이었던 만큼 기억하지 못하며, 또 귀가 도중 주막에 들러 무슨 말을 행했는지도 취한 상태여서 잘 모르겠으나 증인 윤대악 · 정진무가 불온한 말을 들었다면 사실이 그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한 공술이 있고,
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고에 대한 보고서에도 판시 사실과 동일한 요지의 기재가 있고,
1. 동상증인 김교현에 대한 심문조서에서도 판시와 동일한 요지의 공술기재가 있으며
1. 위 증인 윤대악 · 정진무(鄭鎭武)에 대한 신문조서에도 ‘판시 일시 증인 윤대악 방에서 다수인에게 판시 내용과 동일한 발언을 했다’는 요지의 공술 기재가 있으며,
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고의 소행조서(素行調書)에 ‘피고는 고집이 세고 평소에도 과격한 인물이어서 읍 주 시에는 주벽이 심하고 자칫 싸움을 하는 등 불량하다’는 기재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함에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본다.

법률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의 소위는 대정 8년 제령 제7호 시행 전에 이루어졌으므로, 형법 시행법 제2조 · 제10조에 따라 신 · 구법을 비교한 즉, 구법인 보안법에 따르면 동법 제7조에 해당하며, 조선 형사령 제42조에 따라 형명을 변경하여 징역형을 선택, 2년 이하의 형기 범위 안에서 처단할 것이며, 신법인 제령 제7

호에 의하면 동령 제1조에 해당되어 징역형을 선택하고, 10년 이하의 형기 범위 안에서 처단할 것인 바, 가벼운 보안법을 적용, 소정 형기 내에서 피고를 징역 8월에 처하는 바이다. 그러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정 8년 4월 26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청 조선총독부 판사 궁택원야(宮澤圓也)

대정 8년(1919) 형 제481호

판결

전라남도 광양군 인덕면 인서리 학생 김영호(金永鎬) 16세

동도 동군 동면 동리 학생 박용수(朴溶洙) 19세

동도 동군 동면 동리 농업 김석용(金錫溶) 26세

위 보안법 위반 피고사건에 대해 조선총독부 검사 복전풍희 관여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주문

피고 김영호 · 박용수 · 김석용을 각각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품은 이를 몰수한다.

이유

각 피고는 현재 조선 각지에서 치열한 조선독립운동이 일어나고 있음은 우리의 뜻에 합당하다고 하여 자진하여 독립만세를 불러 일반의 독립사상을 고취하겠다는 생각에서, 피고 김영호는 대정 8년 3월 29일 상오 자택에서 태극기 3개를 만들어 인동리 이재갑(李在甲) 방을 찾아가 피고 박용수 · 김석용에게 태극기를 제시하고 오는 4월 1일은 광양읍 장이 서는 날인 즉, 그 날 장터로 나가 만세를 부르자고 제의한 바 이들이 찬성함으로 태극기에 ‘대한독립만세’, ‘대한독립회복호창억만세(大韓獨立回復呼唱億萬歲)’라고 기입하고, 각 피고는 백지에 ‘독립만세를 부르기 위해 4월 1일, 유지자(有志子)는 성내로 속히 오라. 만일 오지 않는 자는 집에 방화할 것이다’, ‘본 군민(郡民)은 전원 모여라. 광양 유지 청년’ 등의 문구를 기재한 불온문서 11매를 작성하고, 그 자리에 와 있던 김태훈(金泰勳) · 김태성(金泰星) · 김행진(金行鎭) · 김용완(金用完) 등에게 이를 보이며 전시와 같은 취지를 설명하고, 이날 밤 안으로 위 문서를 읍내 요소마다 내어 붙여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하자고 그 구체적 방법을 상의했으나 실행 전에 발각되었다.

그러나 이들의 기도는 일반 민중에게 전파되어 4월 1일은 광양읍내에서 전 군민이 들고 일어나 독립만세를 부르게 된다 하여 지방민으로 하여금 공포감을 갖게 함으로써 치안을 방해하였다. 위 사실은,

1. 당 법정에서의 각 피고의 자백,
1. 검사의 피고 김영호에 대한 심문조서에 판시 내용과 같은 공술이 있고,
1. 헌병 상등병 삼산희대치(杉山喜代治) 외 1명이 작성한 복명서(復命書)에 ‘피고 김영호 등의 획책은 이미 군민이 주지하는 바 되어 4월 1일은 광양에서 군중이 들고일어나 독립만세를 부른다는 풍설이 나돌았는데,

이에 앞서 3월 27일에도 만세 사건이 발생한 까닭에 내지인(內地人)들은 벌써부터 전전긍긍한 판에 또 다시 이러한 풍설로 하여 한층 공포에 떨게 하고 있다'는 요지의 기재가 있고 압수된 국기와 판사 취지의 불온문서의 현존함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한다.

법률에 비추어 피고의 소이는 대정 8년 제령 제7호 시행 전이므로 형법시행법 제2조, 형법 제10조에 의해 동 제령과 보안법의 형을 비교하건대, 보안법에 따르면 동법 제7조에 해당하므로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것이며, 제령 제7호에 있어서는 동령 제1호에 해당되어 10년 이하의 형기 내에서 이를 처단할 것이나, 형법 제6조에 의해 전시 보안법을 적용, 각 피고를 처단하는 바이다. 압수품은 범죄공용물로서 피고의 소유물이므로 형법 제19조에 따라 이를 몰수하는 바이다. 그러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정 8년 5월 10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청 조선총독부 판사 궁택원야(宮澤圓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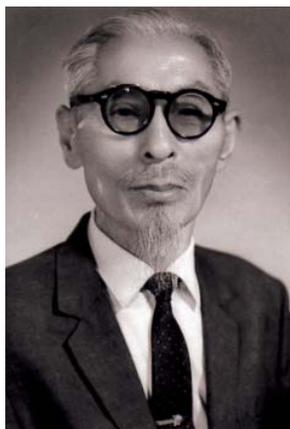


사진2-107 : 독립투사 황채현(진상면 비촌)

황채현(黃彩玆 · 1896년생)은 진상면 비촌마을 출신으로 16세되던 해에 백의회(白衣會)를 조직하여 항일사상을 고취시켰으며, 1919년 3·1운동시에 태극기를 배포하여 군민들에게 만세를 부르게 했고, 상해임시정부의 자금조달 지령을 받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임무를 수행했으며 1924년 백의회(白衣會)사건으로 징역 1년을 언도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국민훈장 애족장을 추서 하였다.

집필 : 전남대학교 사학과 교수 박재상

제2절 일제의 전시체제와 민족말살정책

1929년 10월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주가가 폭락하면서 경제공황이 세계를 강타하자 세계 각국은 자기 조건에 따라 공황극복 방향을 찾았다. 영국 · 프랑스 · 미국 등 선진자본주의국가들은 오타와선언, 리마선언 등으로 나타난 블록경제체제를 통하여 극복 방향을 찾았고,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국가들은 사회주의 통제와 개혁을 강화하여 극복해갔다. 그러나